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한눈에 보는 사회보험법 특강 강의자료

| 이주영 노무사 |

목 차

Chapter 01.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공부방법론	----- 1
Chapter 02. 사회보장기본법	----- 3
Chapter 03. 고용보험법	----- 7
Chapter 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4
Chapter 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1
Chapter 06. 국민연금법	----- 24
Chapter 07. 국민건강보험법	----- 30

Chapter 01.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공부방법론

2024년도부터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변경 예정사항〉

○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2024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

교시	과목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	필수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③ 민 법 ④ 사회보험법	09:00	09:30~11:35 (125분)	과목별 25문항
	선택	⑤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2	필수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09:00	09:30~10:50 (80분)	과목별 40문항
	선택	③ 민 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1:10	11:20~13:20 (120분)	

1분에 1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마킹시간을 고려하면 1문제당 최소 50초 안에는 풀어야 합니다.

기존의 1차 수험방법론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준비해야합니다.

2023년도 사회보험법 문제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앞으로 사회보험법은 더욱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약한 과목에서 과락을 면하고 강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이론으로 기초개념을 이해한 뒤 암기해야 암기가 잘 됩니다. 기본이론 단계에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이해와 기출에 대한 감각을 기른 뒤 시험을 위한 암기는 문제풀이와 마지막 정리를 통해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사회보험법 각 법령별 특징 및 개요

구분	관할	특징	정산제도	보험료 부담	조문수	24년 출제예상 문제수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전체 총괄			43	6
징수법 (고보,산재)	고용노동부	고보,산재에 관한 법률			50	6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직업교육 육아휴직급여	있음	사업주, 근로자 각 50%	118	10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일하다 다쳤을 때	있음	사업주 100%	129	10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60세 이후 수령	없음	사업주, 근로자 각 50%	132	4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병원, 약국 혜택	있음	사업주, 근로자 각 50%	119	4

- 공부해야할 조문의 양과 출제예상 문제수를 비교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네이버 어학사전)
- 급여와 지원금, 보험료와 보험금, 성립과 소멸, 취득과 상실 등 용어 구분
- ~ 해야한다. ~ 할 수 있다. ~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2. 주요 사이트

- 가. 법제처 : www.law.go.kr
- 나.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다. 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라.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마. 고용보험 : www.ei.go.kr
- 바. 사회보장위원회 : www.ssc.go.kr

Chapter 02. 사회보장기본법

1. 법 조문 전체가 모두 중요 (시행령도 중요)

2. 주요 법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운영원칙)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7조(민간의 참여)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사회보장통계)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7장 보칙

제39조(권리구제)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Chapter 03.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2.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2)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보수충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충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로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충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충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충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충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충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6)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7)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관련업무

1. 실업급여 관리업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신청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2.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모성보호 관리업무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 훈련수강 신고 • 수강장려금지급 신청

(8)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부과 관련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수납/체납 관련 업무
- 보험관계 신고(성립/소멸/변경)
- 고용보험일괄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취득, 상실, 변경, 전근, 휴직 등)
- 임의가입신청

(9) 보험료

06.01.0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3. 고용보험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하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라 한다)
※ 근로자 상시 50명미만 고용하는 자영업자
2. “ 이직(離職) ”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 실업 ”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 실업의 인정 ”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보수 ”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 일용근로자 ”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관장
제4조 고용보험사업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보험료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제8조 적용 범위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 · 소멸

제10조 적용 제외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 · 연구

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제12조 국제교류 · 협력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 (삭제)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3장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 지원의 제한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6조 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제39조 (삭제)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의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9조 대기기간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01.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제51조 훈련연장급여

제52조 개별연장급여

제53조 특별연장급여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제55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9조 (삭제)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 반환명령 등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제67조 이주비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 준용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69조의4 기초일액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69조의9 준용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제72조 (삭제)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 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 준용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5 준용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0 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80조 기금의 용도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83조 기금의 출납
 제84조 기금의 적립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6조 차입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제91조 청구의 방식
- 제92조 보정 및 각하
-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제95조 실비변상
- 제96조 결정
- 제97조 결정의 방법
- 제98조 결정의 효력
-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제101조 심리
- 제102조 준용 규정
- 제103조 고지
-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제106조 준용
- 제107조 소멸시효
- 제108조 보고 등
- 제109조 조사 등
-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11조 진찰명령
-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제113조 (삭제)
-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 제116조 벌칙
- 제117조 양벌규정
- 제118조 과태료

Chapter 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주요 용어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합니다.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2)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5)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7)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8)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4조 보험료
제5조 정의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 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 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 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 공단의 사업
제12조 법인격
제13조 사무소
제14조 정관
제15조 설립등기

제16조 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20조 임원의 해임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 이사회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26조 공단의 회계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 출자 등
제33조 (삭제)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9조 사망의 추정

제40조 요양급여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제51조 재요양
제52조 휴업급여
제53조 부분휴업급여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1조 간병급여
제62조 유족급여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71조 장례비
제72조 직업재활급여
제73조 직업훈련비용
제74조 직업훈련수당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8조 장해특별급여
제79조 유족특별급여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총당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7조의2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3장의2 진폐¹⁾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2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 장애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애급여 · 장례비 산정기준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1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제94조 장애급여자의 고용 촉진

1) 진폐란 허파에 먼지가 쌓여 일어나는 증상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6조 기금의 용도

제9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1조 차입금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보칙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2조 시효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4조 보고 등

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19조 진찰 요구

제119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5조 (삭제)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127조 벌칙

제128조 양벌규정

제129조 과태료

Chapter 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법조문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3조 기준보수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산금), 산재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금의 고지수납 - 근로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 보험가입자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제16조의4 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8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1 수정신고

제16조의1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19조의2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3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5 제2차 납부의무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총당 및 반환

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총당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4 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6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7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 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1조 시효

제42조 시효의 중단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제44조 보고

제45조 조사

제45조의2 소액 처리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 업무의 지도·감독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5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 (삭제)

제49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49조의6 벌칙

제49조의7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Chapter 06.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3. 국민연금의 가입형태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외국인가입자

4. 법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 가입 대상

제7조 가입자의 종류

제8조 사업장가입자

제9조 지역가입자

제10조 임의가입자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제15조 사망의 추정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5조 공단의 업무

제26조 법인격

제27조 사무소

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

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

제28조 정관

제29조 설립 등기

제30조 임원

제31조 기금이사

제32조 임원의 임기

제33조 임원의 직무

제34조 대리인 선임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 이사회

제39조 직원의 임면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42조 공단의 회계
 제43조 공단의 수입·지출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 잉여금 처리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제47조 업무 위탁
 제48조 「민법」의 준용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9조 급여의 종류
 제50조 급여 지급
 제51조 기본연금액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제55조 미지급 급여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2절 노령연금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3절 장애연금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 장애연금액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4절 유족연금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4조 유족연금액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7조 반환일시금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80조 사망일시금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6절 급여 제한 등
제82조 급여의 제한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4조 (삭제)
제85조 (삭제)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 국고 부담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88조의2 납입의 고지 등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3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3조 (삭제)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제96조 서류의 송달
제97조 연체금
제97조의2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의2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제106조 기금 출납
-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제108조 심사청구
-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제110조 재심사청구
-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장 보칙

-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제114조 대위권 등
- 제115조 시효
-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117조 단수의 처리
- 제118조 연금원부
-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제120조 진단
-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제122조 조사·질문 등
-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123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124조 비밀 유지
- 제125조 소득추소·탈루자료 통보 등
-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9장 벌칙

- 제128조 벌칙
- 제129조 (삭제)
- 제130조 양벌규정
- 제131조 과태료
- 제132조 (삭제)

Chapter 07. 국민건강보험법

1. 건강보험 적용대상

-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적용대상 및 인구(2023년 6월 기준)		
분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비율 (단위 : %)
계	51,426	100
직장가입자	19,827	38.6
피부양자	16,996	33.0
지역가입자	14,603	28.4

※ 각 항목은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지역보험료
- (2)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4)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공무원	7.09%	3.545%		3.545%
사립학교교원	7.09%	3.545%	2.127% (30)	1.418%(2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국외체류시 해당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3. 주요 법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 사용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 사업장 ”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 공무원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교직원 ”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9조의2 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 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 보험자
제14조 업무 등
제15조 법인격 등
제16조 사무소
제17조 정관
제18조 등기
제19조 해산
제20조 임원
제21조 징수이사
제22조 임원의 직무
제23조 임원 결격사유
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6조 이사회

제27조 직원의 임면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 규정 등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 회계
 제36조 예산
 제37조 차입금
 제38조 준비금
 제39조 결산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4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 요양급여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제41조의4 선별급여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제42조 요양기관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9조 요양비
 제50조 부가급여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2조 건강검진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4조 급여의 정지
 제55조 급여의 확인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8조 구상권
 제59조 수급권 보호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 설립

제63조 업무 등

제64조 법인격 등

제65조 임원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제68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69조 보험료제70조 보수월액제71조 소득월액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 보험료율 등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 가산금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0조 연체금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 결손처분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6조 보험료등의 총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 이의신청

제88조 심판청구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90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제91조 시효

제92조 기간 계산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4조 신고 등

제95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6조 자료의 제공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제97조 보고와 검사

제98조 업무정지

제99조 과징금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6조 소액 처리

제107조 끝수 처리

제108조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2조 업무의 위탁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벌칙

제117조 벌칙

제118조 양벌 규정

제119조 과태료